

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이에 따른 구제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, 상위법인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의 유효기간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년 연장 되었습니다.
또한, 특별법의 한시적 성격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시행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,
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서만 조례가 적용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